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759

발의연월일: 2025. 6. 12.

발 의 자:윤한홍・박상웅・권성동

김상훈 • 박덕흠 • 최수진

박형수 · 권영진 · 박정하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주회 산 주식의 한도를 정하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 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사후 승인을 받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지주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식보유자가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으로 당초 의도한 주주가치의 제고 및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 비율이 은행지주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 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 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법률 제 호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제8조제1항·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 (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8조제1항·제3항 또는 제 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 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8조제3항 또는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 2)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8 조제1항·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의3제6항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10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② (생 략)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지		
	주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u>1. 제8조제1항·제3항 또는 제8</u>		
	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		
	유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		
	료하여야 한다.		
	<u>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u>		
	<u>간 이내에 제8조제1항·제</u>		
	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		
	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		
	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 <u>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u> 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8조제3항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
 을 받는 조치
 - 2)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이내에 제8조제1항・ 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 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③ 금융위원회는 <u>제1항 또는</u> <u>제2항</u>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있다.

④ (생 략)

- 제57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 ⑤ (생 략)
 -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 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는 <u>제10조제3항</u>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 제69조의2(이행강제금) ① 금융위 원회는 제8조의3제5항·제10조 제3항·제10조의2제5항·제18 조제3항·제22조제9항·제57조 의3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제4 호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 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 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	록 하
	여야 한다.		
(<u>4</u>	<u>제1항,</u>	제2항
Ţ	<u>또는 제3항</u>		
_			
_			
-			
-			
(<u>5</u> (현행 제4항고	과 같음)	
제5	57조의3(기관전성	용 사모	집합투
7	자기구등에 대한	<u></u> 제재	등) ①
,	~ ⑤ (현행과	같음)	
(6		
-			
-	제10조	제4항	
-			
제69조의2(이행강제금) ①			
-		· <u>}</u>	제10조
2	제4항		
-			
-			
-			
-			
-			
-			
-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 1. · 1의2. (생략)
 - 2. <u>제10조제3항</u>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자
 - 3. ~ 12. (생 략)
 - ②・③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과태료) ①
<u>.</u>
1. · 1의2. (현행과 같음)
2. <u>제10조제4항</u>
3.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